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6.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제4조)

○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규정 명시(제5조)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용(제7조~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제2호(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는 금액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 상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며,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규정하여 내실있는 통합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현재까지 위원회 기능을 하였던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함.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성별비율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20년 11월 5일 제정된 바 있으며,
- 이번 전부개정은 '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①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②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③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가 있음.
- ①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관련, 현재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기에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보여짐.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은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률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②본 개정 조례안의 제5조 및 제6조 관련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도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개정하는 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었으나, ③통합기금 관련 전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정성 있는 심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위원회 구성이 처음이니만큼, 기금 분야에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자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임.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4 호
----------	---------

제출연월일: 2024.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한 여유 자금을 비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안 제4조)
- 나.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규정 명시(안 제5조)
- 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용(안 제7조~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3)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24. 4. 11. ~ 5. 2./ 21일 간) 결과: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3. 통합기금운용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

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상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